

# Proposition Documents for EOS Constitution V4 (EOS 헌법 4차 개정을 위한 제안 문서)

## 1. 헌법 전문

해당 헌법은 EOS 생태계의 발전과 권리보장 및 보호, 의무 준수를 위해 작성되었으며, 각 조항 및 세부사항은 언제나 EOS 생태계의 민주주의 방식인 '투표'를 통해 추가, 변경, 삭제 될 수 있다.

용어의 통일을 위해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.

- 'EOS 플랫폼'은 EOS 메인넷 체인을 칭한다.
- 'EOS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'을 이하 '이용자'라고 칭한다.
- 'EOS 관련 dApp 개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'는 '서비스 제공자'라고 칭한다.
- 'EOS 플랫폼 상에서 노드를 유지하며 블록을 생산하는 주체'는 이하 '블록 생산자'라고 칭한다.

## 2. 헌법 준수의 의무

해당 헌법은 EOS 생태계에 적용되는 헌법으로써, 이용자,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이 헌법에 귀속되며,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.

- 이 헌법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EOS에 관한 계약(이하 계약)의 체결에 쓰이며, 기본적으로 계약의 기준은 '리카르디안 계약'<sup>1</sup>에 의거한다.
- EOS관련 서비스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및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이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.
- 분쟁 발생시에는 해당 헌법의 적용 여부에 의거하여,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---

<sup>1</sup>리카르디안 계약에 대해 설명한 문서(EOSYS 제공)

<https://medium.com/eosys/%EB%A6%AC%EC%B9%B4%EB%A5%B4%EB%94%94%EC%95%88-%EC%BB%A8%ED%8A%B8%EB%9E%99%ED%8A%B8-ricardian-contract-%EB%A5%BC-%EC%86%8C%EA%B0%9C%ED%95%A9%EB%8B%88%EB%8B%A4-9834ae65a982>

### 3. 분쟁의 해결방안

-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 발생시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CAF(EOS Core Arbitration Forum, 이하 **핵심 중재 기구**)를 통해 분쟁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.
- 분쟁 발생 시, 분쟁 당사자들은 핵심 중재 기구를 통해 중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중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.

- 핵심 중재 기구
  - 핵심 중재 기구의 위임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
  - 핵심 중재 기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제 3의 중재자
- 중재자 자격을 얻는 구성원은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
  - 블록 생산자 회의는 ‘분쟁 중재 해결안’의 구현을 위한 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- 선임되는 모든 중재자는 뉴욕 중재 협약<sup>2</sup> 중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 시스템은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.
  - 중재인은 EOS 생태계 유지를 위한 형평의 원칙(Maxims of Equity)에 따라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.

### 4. 이용자 준수사항

모든 EOS 이용자는 EOS플랫폼 상의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 단, 신의 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<sup>3</sup>

#### 4.1 서비스 사용 제한

서비스 이용 도중 아래 ‘위반 조건’ 항목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 시, 블록 생산자 회의는 핵심 중재 기구의 중재 요청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- 의도적인 악의가 포함된 행위.
- 타인의 재산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.
- EOS 생태계에 영향<sup>4</sup>을 줄 수 있는 행위.

<sup>2</sup> [http://www.uncitral.org/uncitral/uncitral\\_texts/arbitration/NYConvention\\_status.html](http://www.uncitral.org/uncitral/uncitral_texts/arbitration/NYConvention_status.html)

<sup>3</sup> duties of candor and good faith

<sup>4</sup>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,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‘토큰 경제’ 또는 ‘시스템 자원’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.

## 4.2 토큰의 과독점 규제<sup>5</sup>

어느 누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된 전체 EOS 토큰의 10%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.

## 4.3 투표 규정

EOS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블록 생산자를 투표할 권한이 있다.

## 4.4 대리 투표(프록시) 규정

EOS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는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, 대리 투표를 위해 '투표 대리인(이하, 프록시)'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.

프록시에 의해 투표 된 투표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'유효한 투표권'을 갖는다.

-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프록시에게 이용자의 의사대로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프록시는 대리 투표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, 대리 투표를 요청한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프록시는 이 조항을 준수하고 문제가 없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.

## 4.5 '이용자'는 자신의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.

# 5. 블록 생산자 규정

## 5.1 블록 생산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.

- 블록 생산자는 블록 생산을 위해 Block Producer Agreement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, 블록 생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'Block Producer Agreement'의 내용에 대한 수정은 시스템 컨트랙트 상 존재하는 bp등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.
- 블록 생산자는 핵심중재기구의 중재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. 다만,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권리도 있다.

---

<sup>5</sup> 추후 토의.

- 블록 생산자는 코드로 인해 이용자가 재산 및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협조한다.

## 5.2 블록생산자 회의

- 블록생산자 및 후보자는 EOS 생태계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논의에 참여할 책무를 가진다.
- 모든 회의 준비 과정 및 논의는 그 결과 또는 결론에 상관없이 전 과정에 걸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.

## 6. EOS 생태계 발전 기금 정책

- 커뮤니티는 EOS 생태계 발전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기금운용을 제안할 수 있다.
- 발전 기금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집행내역과 산출물을 커뮤니티에 투명하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발전 기금은 EOS 생태계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그 이후부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.

## 7. 토큰 공급량 변화 정책

- EOS플랫폼은 블록 생산자에게 블록 생산의 보상으로 EOS블록체인을 지속하기에 적절한 비율을 지급한다.
- 커뮤니티는 EOS블록체인 운용을 통해 유보된 기금을 EOS생태계 발전 기금에 기여할 수 있다.
- 커뮤니티는 EOS총 공급량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이용자 총투표(Referendum)의 결정에 따른다.

## 8. 헌법 수정 요건

이 헌법에 대해 수정 및 변경을 원할 때는,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.

- 헌법 개정은 15% 이상의 유효표에 의해 개정한다. 단, 최대 120일 투표기간내에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최소한 10% 이상 많고, 해당 결과가 30일 동안 지속되면 투표의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확정한다.